

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
운영등에관한조례(안)심사보고서

96. 3. 30.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2.5.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96.2.6.
- 다. 상정일자 : 제36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(96.2.8.) 상정, 심사, 보류
제3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96.3.30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연호 보건 지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 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,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대해 심의·조정함(안 제2조)

○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(안 제3조)

○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, 제9조)

○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유지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동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

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(1995.1.5. 법률 제4914호) 제10조에 근거한 제정안임.

○ 동 조례안은 제2조에서 제3호 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”는 국민건강진흥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동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에서 안 제2조제3호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지 않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연호 보건지도과장) : 안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은 불법광고를 하는 업소가 있으면 마포구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요청 공문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봄.

5. 토론요지 :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6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.3.30. 한대운 위원의 1인

나. 수정이유

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임.

다. 수정 주요 골자

— 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”를 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.(안 제2조제3호)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

**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
등에관한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**

제안년월일 : 1996. 3. 30.

제안자 : 시민보건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.

2. 수정주요골자

- "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"를 "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"으로 함.(안 제2조제3호)

**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
등에관한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**

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
등에관한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원안·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기능) "생략"	제2조(기능) "원안과 같음"
1.~2. "생략"	1.~2. "원안과 같음"
3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심의	3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4. "생략"	4. "원안과 같음"

**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
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**

1996. 3. 30.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3월 20일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3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7회의회(입사회) 제1차 위원회(96.3.30.) 상정 질의토론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박재용

가. 제출이유

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함

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간사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장으로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관수)

○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5.3.14. 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사무직원유현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**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
조례개정조례(안)**

의안
번호 69

제출일자 : 1996. 3. 20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차량의 폭증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